

<주요 위반사례별 처분내역, 배출업체 기준>

위반내용	위반법	처분(처벌)법	벌칙 및 과태료 처분사항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불법매립/불법소각	제8조 제1항, 제2항	제63조 제1호, 제2호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제13조(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	제13조	제65조 제1호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장폐기물 부적정처리	제18조 제1항	제65조 제11호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	제39조의 2	제65조 제21호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 설치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29조 제2항	제65조 제18호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환경 오염 한 자(강화시행 : 20. 5.27.) -기준 : 주변 환경오염이 있을 경우에 사법조치 강화 : 오염행위에 관계없이 사법조치	제13조	제66조 제1호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내용	위반법	처분(처벌)법	벌칙 및 과태료 처분사항
위·수탁기준 및 처리과정 주기적 확인의무 미이행 (신설시행 : 20. 5.27.)	제17조 제1항 제3호	제66조 제3의 3호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 변경확인 미이행	제17조 제5항, 제6항	제66조 제4호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 <강화시행 : 20. 5.27.> 기존 : 과태료(1,000만원이하)	제18조 제3항	제66조 제4의4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제29조 제1항	제66조 제10호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제29조 제2항	제66조 제11호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변경	제29조 제3항	제66조 제12호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무원이 요청한 자료 미보고(거짓보고)	제39조 제1항	제66조 제18호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내용	위반법	처분(처벌)법	벌칙 및 과태료 처분사항
공무원 출입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설시행 20.5.27.)	제39조 제1항	제66조 제19호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	제17조 제2항	제68조 제1항 제1의3호	1,000만원이하 과태료
유해성 정보자료 미작성,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18조의2 제1항	제68조 제1항 제1의6	1,000만원이하 과태료
유해성 정보자료 수탁자에게 미제공	제18조의2 제3항	제68조 제1항 제1의7	1,000만원이하 과태료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제34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5호	1,000만원이하 과태료
실적보고서 제출명령 미이행 지정폐기물여부 확인의무	제38조 제3항	제68조 제1항 제6호	1,000만원이하 과태료
미이행(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득한자)	제17조 제1항 제1호	제68조 제2항 제1호	300만원이하 과태료
지정폐기물 변경확인 대상중 상호변경 미이행	제17조 제6항 제1호	제68조 제2항 제1의3	300만원이하 과태료
사업장폐기물 변경신고 미이행	제17조 제2항	제68조 제2항 제5호	300만원이하 과태료

위반내용	위반법	처분(처벌)법	벌칙 및 과태료 처분사항
지정폐기물 실적 보고 기간내 미이행	제38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제9의2호	300만원이하 과태료
실적보고서 제출명령 미이행자(사업장폐기물배출 신고자)	제38조 제3항	제68조 제2항 제9의3호	300만원이하 과태료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중요사항 -생산공정이나 사용원료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경우	제18조의2 제2항	제68조 제2항 제12의2호	300만원이하 과태료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 자료를 수탁자에게 미제공	제18조의2 제3항	제68조 제2항 제12의 3호	300만원이하 과태료
유해성 정보자료를 보관장소에 미게시(미비치)	제18조의2 제4항	제68조 제2항 제12의 4호	300만원이하 과태료

위반내용	위반법	처분(처벌)법	벌칙(과태료) 및 처분사항
올바로 시스템에 기간내 미입력, 부실입력	제18조 제3항	제68조 제3항 제4의 3호	100만원이하 과태료
폐기물 담당자 교육 미이행	제35조 제1항, 제2항	제68조 제3항 제6호	100만원이하 과태료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제36조 제1항	제68조 제3항 제7호	100만원이하 과태료
폐기물(일반) 실적보고 기간내 미제출	제38조 제1항	제68조 제3항 제8호	100만원이하 과태료